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지역경제과)

의안번호	제265호
제 출 자	정운주의원회 6명(2024. 3. 4.)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태조사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7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 2024. 3. 7. ~ 2024. 3. 12.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정의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를 새롭게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 2007. 7. 1.] [법률 제 8217호, 2007. 1. 3., 제정] 시행¹⁾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등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였으며,
 - 2012년 7월 19일, 성북구 공공구매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음.
 - 또한 2014년 12월 16일, 사회적경제센터 증축에 맞추어 사회적경제
-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가치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음.

○ 2023년말 기준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49개, 협동조합 152개, 마을기업 7개로 총 208개가 운영되고 있음.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 제1호 “사회적가치” 2)와 제4호 “사회적경제” 3)의 정의

2) 제2조(정의) 1. “사회적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

1. “사회적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기회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제2조(정의) 4.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

4.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제2조제1호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를 새롭게 규정함.

- 안 제6조제4항,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태조사를 매 2년마다에서 매4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한 바, 이는 제6조제1항4)에 따라 기본계획이 4년마다 수립되므로, 제4항 실태조사 기간 또한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6조제3항제1호, 위원회 구성에 현 제3항제1호 및 제2호5)를 삭제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대표’로 변경하고,
- 안 제16조제3항제3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대표’를 신설함.

4)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수립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생활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위원
2.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 안 제16조제3항제4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함.
 - 안 제17조제6항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규정하였는 바, 이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